

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 신규 대조표

[관세청고시 제2017-83호, 2017. 12. 29.]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오류점수비율”이란 신고인 및 화주별로 일정기간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 (오류점수 / 총 수출(입) 신고건수 * 100)을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전(前) 분기 동안 ----- ----- (전분기 오류점수 / 전분기 총 수출(입) 신고건수 * 100)-----	규정 명확화
제4조(신고서의 정정·취하)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13. (생 략) 14.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‘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’를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<신 설>	제4조(신고서의 정정·취하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----- ----- 원산지증명서 발급 ----- ----- 다만,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정한 경우에 한함	- 용어정비 -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
제5조(오류발생의 통보) ①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신고인 또는 화주별로 전국 세관에서 발생한 오류를 관세청 오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계하고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5일까지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의 전자사서함에 EDI전자문서(별지 제1호 서식)로 전송 통보 하여야 하며,	제5조(오류발생의 통보) ① ----- ----- ----- 전자통관시스템 ----- ----- ----- ----- 전자문서 ----- -----	용어 정비

현행	개정안	비고
신고인 및 화주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
제8조(오류점수의 계산) ①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다만,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(이하 “신청정정”이라 한다)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(이하 “직권정정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5점으로 한다.</u> 6. ~ 10. (생략) <신설> ⑤ <u>신고수리일 이틀 후(기산시 공휴일 또는 「근로자의 날 제정</u> <u>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)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0.2점으로 한다. 다만,</u> <u>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0.2점으로 한다.</u>	제8조(오류점수의 계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정정하는 경우 관세 등 세액에 대한 오류점수는 란별 5점으로 한다.</u> 6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(72) 또는 계약상이(93)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.</u> ⑤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항목당(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건당) 0.2점으로 한다.</u>	- 규정 명확화 - 환급관련 거래구분 정정 전면 허용에 따른 성실신고 유도 규정 명확화
<신설>	부칙 <고시 제2018-00호 (2018.00.00)>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	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	